[별지 제37호서식]

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

1. 조사대상 공유수면

① 위　　치		② 면적(채취・투기량)	㎡(　　㎥)
③ 점용・사용자	※점용・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록	④ 점용・사용기간	
⑤ 점용・사용 형태			

2. 조사사항

⑥ 조사연월일	⑦ 조사자직 및 성명	⑧ 조 사 내 용

3. 조치사항: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청이 행한 고발・시정・과태료부과 등의 내역

⑨ 연 월 일	⑩ 조치(의뢰)기관	⑪ 조치(의뢰)내용	⑫ 조 치 결 과

조 사 사 항

가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공사의 준공 사항

나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권리・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

다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

라. 공유수면의 점용・사용 실태 및 관리상태

마. 전복・침몰・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현황 및 처리실적

바. 그 밖에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유지・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